

의안번호	2216882
의 퇴 인	임종득 의원
회 답 일	2026. 5. 6.
추 계 번호	26G09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중소기업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등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9년에서 2041년까지 13년간 총 4조 6,366억원(연평균 3,56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2029~2033년간 2조 5,01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창업 이후 감면이 다년간 지속됨에 따라 2034년 이후에도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2029~2033년간 92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 이전 이후 감면이 다년간 지속됨에 따라 2034년 이후에도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2029~2033년간 51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사 이전 이후 감면이 다년간 지속됨에 따라 2034년 이후에도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단,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취업자와 이들의 소득세 산출세액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에 따라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9~2041년

(단위: 억원)

	2029	2030	2031	2032	2033	'34~'41	누적	연평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조)	-1,667	-3,335	-5,002	-6,670	-8,337	-16,675	-41,686	-4,632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3조)	-	-93	-185	-278	-369	-2,083	-3,009	-251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3조의2)	-	-51	-103	-154	-206	-1,157	-1,671	-139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63조의4)		추	정	곤	란			
계	-1,667	-3,479	-5,290	-7,102	-8,913	-19,915	-46,366	-3,567

주: 동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안 제63조의4(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에 대한 세수 효과의 추계가 포함되지 않아 과소추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폐지 - 적용기한: (현행) 2027.12.31. → (개정안) 없음	
2	안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폐지 - 적용기한: (현행) 2028.12.31. → (개정안) 없음	
3	안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폐지 - 적용기한: (현행) 2028.12.31. → (개정안) 없음	
4	안 제63조의4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 - 감면율: 5년간 50% - 감면한도: 연 500만원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간 ※ 단, 감면대상기업에 취업 후 다른 감면대상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 감면대상기업에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 계산 - 중복적용 제한: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	안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3	안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4	안 제63조의4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취업자수 및 소득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6년에 의결되어 각 조항의 적용기한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가정

- 안 제6조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7년말까지로, 개정안은 2028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2029년부터 발생
 - － 2028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2029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9년부터 발생
-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8년말까지로, 개정안은 2029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며, 세수효과는 2030년부터 발생
 - － 2029년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는 2030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30년부터 발생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6조)

- 향후 신규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2025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세법개정에 따른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한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 동 조항은 2024년 세법개정으로 2026년 이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기본 감면율이 조정됨에 따라, 기존 감면율을 적용받은 2025년 감면실적을 현행 감면율로 조정한 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연도별로 배분
- 향후 지역별·연령별 분포는 2025년 분포를 유지한다고 가정
 - － 감면율 조정을 위한 지역별·연령별 분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나타난 2025년 창업기업의 지역별, 창업주 연령별 분포와 동일하다고 가정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추계(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 향후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 세액감면은 2024년 및 2025년 연평균 수준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추계
 - 감면실적은 과거 10년(7년 100% + 3년 50%) 등에 적용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향후 세수효과는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기업이 첫 해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이전 후 8년(5년 100% + 3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2025년 세법개정으로 감면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 감면기간(수도권 낙후지역 등 기준): ('25년 이전) 5년 100% + 2년 50% → ('26년 이후) 5년 100% + 3년 50%
 - 단, 동 감면실적은 이전지역에 따라 감면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7년 100% + 4년 50% 또는 10년 100% + 5년 50%)¹⁾도 있으나 지역별로 세부적인 감면실적을 구분할 수 없어 이는 고려하지 않음
- 이외에도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함(안 제63조의4)
 -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인구감소지역 취업자, 중복적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등과 이들의 근로 소득 및 산출세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 등이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3. 상세 추계내역

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기업의 생존 및 기반 확충을 위해 창업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2024년 세법개정으로 감면율 조정

- 주요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24년 세법개정으로 수도권내에서 지역별·연령별로 적용되는 기본감면율이 조정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감면율을 25%p 인하

[표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본감면율: 2024년 개정전·후

구분		개정전 (2025년 이전 창업기업 적용)	개정후 (2026년 이후 창업기업 적용)
일반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5년 50%	수도권: 5년 25% 비수도권: 5년 50%(좌동)
청년 등 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년 50%	5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5년 100%	수도권: 5년 75% 비수도권: 5년 100%(좌동)

주: 청년 등 창업중소기업에는 청년(15~34세) 창업중소기업 및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포함

- 개정안은 현행 2027년말로 규정된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 적용기한: (현행) 2027.12.31. → (개정안) 폐지

□ (감면실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2021년 4,864억원에서 2025년 9,156억원으로 증가

-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2021년 2,574억원에서 2025년 2,612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2021년 2,290억원에서 2025년 6,544억원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높은 증가세를 보임

[표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감면실적	4,864	6,080	7,629	8,333	9,156
- 소득세	2,290	3,519	4,841	5,702	6,544
- 법인세	2,574	2,561	2,788	2,631	2,612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연도별 환산) 2025년 감면실적(잠정)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음

- 2025년 감면실적은 2021~2025년간 창업한 중소기업의 감면실적이 누적된 값으로, 2025년 신규 창업한 기업의 감면실적은 이 중 20%(1/5)라고 가정하여 추계
 - 1년 단위 환산액: 1,831억원 = 9,156억원 ÷ 5

□ (감면을 조정실적 추계)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감면을 조정을 반영하여 향후 신규 창업기업의 연간 감면실적을 조정하면 다음과 같음

- 2024년 세법개정으로 수도권내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은 기존 감면을 대비 25%p 하향조정
- 2025년 기준 창업기업의 지역별·연령별 분포는 다음과 같이 구분
 - (지역별)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별 분포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기업동향」의 광역시도별 창업기업 수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시군구별 기업 수에 비례하여 분포한다고 가정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인천 일부와 경기도 일부에 분포²⁾함에 따라, 지역이 광역시도로만 구분되는 창업기업 수 외에 시군구별 기업 수로써 비율을 산정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 42.3% = 57.0% × 74.2%,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외: 14.7% = 57.0% × 25.8%, 비수도권: 43.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인천 8개구(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경기 14개시(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시흥, 군포, 의왕, 하남)로 산정

[표 4] 창업기업의 지역별 분포: 2025년 기준

(단위: 만개, %)

	창업기업수 (광역시도별)	기업수(시군구별)		
		전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전체	113.6	636.3	—	—
－ 수도권	64.7 (57.0)	311.0	230.7 (74.2)	80.3 (25.8)
· 서울	21.9 (19.3)	117.6	117.6 (100.0)	—
· 인천	7.3 (6.5)	32.9	31.7 (96.2)	1.2 (3.8)
· 경기	35.4 (31.2)	160.5	81.5 (50.8)	79.0 (49.2)
－ 수도권외	48.9 (43.0)	325.4	—	—

주: ()안은 전체 창업기업수에서 지역별로 차지하는 비중과 수도권내 기업수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기업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 (연령별) 연령별 분포는 중소기업벤처부의 「창업기업동향」의 창업기업 수를 기준으로 하되, 30~39세 창업기업의 경우 50%만 청년 등 창업기업(34세 이하)에 포함된다고 가정
- ※ 청년 등 창업기업 비중: 24.5%, 일반창업기업 비중: 75.5%
- 창업기업의 지역별·연령별 분포와 감면율을 기준으로 2025년 감면실적의 분포를 추정

[표 5] 2025년 감면실적의 지역별·연령별 분포 추정

(단위: %, 억원)

지역별	연령별	비중		감면율(C)	A×B×C	감면액 배분
		지역별(A)	연령별(B)			
계					41.1	1,831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기업 등	42.3	24.5	50	5.2	231
	일반창업기업	42.3	75.5	—	0	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기업 등	14.7	24.5	100	3.6	161
	일반창업기업	14.7	75.5	50	5.6	247
수도권외	청년창업기업 등	43.0	24.5	100	10.5	470
	일반창업기업	43.0	75.5	50	16.2	723

주: ()안은 전체 창업기업수에서 지역별로 차지하는 비중과 수도권내 기업수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기업수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중소기업벤처부, 「창업기업동향」 및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배분된 감면액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외 감면율 조정을 적용하면, 향후

신규 창업기업에 따른 연간 감면액은 1,667억원으로 추정

－ 지역별·연령별 추정치에 기존 및 현행 감면을 변화를 비율로써 반영

[표 6] 2025년 감면실적의 지역별·연령별 분포 추정

(단위: %, 억원)

지역별	연령별	감면율		조정전 감면 추정치(C)	조정후 감면 추정치(C×B/A)
		'25년 이전 (A)	'26년 이후 (B)		
계				1,831	1,667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	청년창업기업 등	50	50	231	231
	일반창업기업	—	—	0	0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외	청년창업기업 등	100	75	161	120
	일반창업기업	50	25	247	124
수도권외	청년창업기업 등	100	100	470	470
	일반창업기업	50	50	723	723

□ (연도별 세수효과) 감면의 신고시점을 고려한 연도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배분

○ 안 제6조에 따라 세수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2028~2032년 신규 창업기업의 연도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음

－ 동 제도는 현행 2027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8년 신규 창업기업부터 적용

[표 7] 개정안에 따른 감면액 추정: 법인세 및 소득세, 2029~2037년

(단위: 억원)

구분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8년 신규창업	1,667	1,667	1,667	1,667	1,667				
'29년 신규창업		1,667	1,667	1,667	1,667	1,667			
'30년 신규창업			1,667	1,667	1,667	1,667	1,667		
'31년 신규창업				1,667	1,667	1,667	1,667	1,667	
'32년 신규창업					1,667	1,667	1,667	1,667	1,667
계	1,667	3,335	5,002	6,670	8,337	6,670	5,002	3,335	1,667

(3) 추계결과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9년에서 2037년까지 9년간 총 4조 1,686억원(연평균 4,6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9~2037년

(단위: 억원)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안 제6조)	-1,667	-3,335	-5,002	-6,670	-8,337	-6,670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 (안 제6조)	-5,002	-3,335	-1,667	-41,686	-4,632	

나.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3조)

(1) 제도개요 및 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소득세 감면

-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계속하여 공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
- 감면내용: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소득세 감면

–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8~1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이전에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이 적용되었음³⁾

3)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표 9] 지역별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율: 2025년 개정전·후

(단위: %, 억원)

지역별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개정 전 (2025년 이전에 공장이전 기업)	개정 후 (2026년 이후에 공장이전 기업)
수도권	낙후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일반지역	감면없음	감면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낙후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일반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일반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10년 100% + 5년 50%
	일반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10년 100% + 5년 50%
	일반지역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 개정안은 현행 2028년말로 규정된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수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적용기한: (현행) 2028.12.31. → (개정안) 폐지

- (감면실적)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실적은 2024년 799억원, 2025년 775억원 수준

- 2024년 및 2025년의 연평균 감면액은 787억원 수준

[표 10]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실적: 2024~2025년

(단위: 억원)

	2024	2025(잠정)	연평균(2024~2025년)
감면실적	799	775	787
– 소득세	604	634	619
– 법인세	195	141	168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2024~2025년 연평균 감면액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각각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4~2025년 연평균 감면액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1년 단위 환산액: 100% 감면액 93억원, 50% 감면액 46억원
 - ※ 93억원 = 787억원 ÷ 8.5(7년 × 1 + 3년 × 0.5), 46억원 = 93억원 ÷ 2
- 공장을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8년(5년 100% + 3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동 제도는 현행 2028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9년 수도권 밖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
 - 본사가 이전한 지역별로 구분된 조세지출 실적이 부재함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4년 50% 또는 10년 100% + 5년 50%)⁴⁾은 고려하지 않음

[표 11] 연도별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30~2041년
(단위: 억원)

구분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28년 이전법인	93	93	93	93	93	46	46	46				
2029년 이전법인		93	93	93	93	93	46	46	46			
2030년 이전법인			93	93	93	93	93	46	46	46		
2031년 이전법인				93	93	93	93	93	46	46	46	
2032년 이전법인					93	93	93	93	93	46	46	46
계	93	185	278	370	463	417	370	324	231	139	93	46

(3) 추계결과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30년에서 2041년까지 12년간 총 3,009억원(연평균 2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30~2041년

(단위: 억원)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3조)	-93	-185	-278	-370	-463	-417	-370
	2037	2038	2039	2040	2041	누적	연평균
수도권 밖 공장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3조)	-324	-231	-139	-93	-46	-3,009	-251

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폐지 (안 제63조의2)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

- 감면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은 2020년까지 공장·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 본사 이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 감면내용: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
 -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8~1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 ※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6년부터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이전에는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⁵⁾

5)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등에 대해서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표 13] 지역별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율: 2025년 개정 전·후

(단위: %, 억원)

지역별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개정 전 (2025년 이전에 본사이전 기업)	개정 후 (2026년 이후에 본사이전 기업)
수도권	낙후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일반지역	감면없음	감면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낙후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일반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일반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10년 100% + 5년 50%
	일반지역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10년 100% + 5년 50%
	일반지역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 개정안은 현행 2028년말로 규정된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적용기한: (현행) 2028.12.31. → (개정안) 폐지

- (감면실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은 2024년 384억원, 2025년 490억원 수준

- 2024년 및 2025년의 연평균 감면액은 437억원 수준

[표 14]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실적: 2024~2025년

(단위: 억원)

	2024	2025(잠정)	연평균(2024~2025년)
감면실적	384	490	437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2024~2025년 연평균 감면액을 바탕으로, 해당 금액을 1년 단위로 각각 환산하여 세수효과 추계

- 2024~2025년 연평균 감면액은 과거 10년(7년 100% 감면, 3년 50% 감면)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액의 합계액이므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 후 배분
 - 1년 단위 환산액: 100% 감면액 51억원, 50% 감면액 26억원
 - ※ 51억원 = 437억원 ÷ 8.5(7년 × 1 + 3년 × 0.5), 26억원 = 51억원 ÷ 2
- 본사를 이전한 첫해에 소득이 발생하여 세수효과는 이전 후 8년(5년 100% + 3년 50%)간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동 제도는 현행 2028년말까지 적용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9년 수도권 밖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
 - 본사가 이전한 지역별로 구분된 조세지출 실적이 부재함에 따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감면기간(7년 100% + 4년 50% 또는 10년 100% + 5년 50%)⁶⁾은 고려하지 않음

[표 15] 연도별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액 추정치: 2030~2041년
(단위: 억원)

구분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28년 이전법인	51	51	51	51	51	26	26	26				
2029년 이전법인		51	51	51	51	51	26	26	26			
2030년 이전법인			51	51	51	51	51	26	26	26		
2031년 이전법인				51	51	51	51	51	26	26	26	
2032년 이전법인					51	51	51	51	51	26	26	26
계	51	103	154	206	257	231	206	180	129	77	51	26

(3) 추계결과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액 감면의 적용기한을 폐지함에 따라, 법인세는 2030년에서 2041년까지 12년간 총 1,671억원(연평균 13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수도권 밖 광역시 등 지역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30~2041년

(단위: 억원)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3조의2)	-51	-103	-154	-206	-257	-231	-206
	2037	2038	2039	2040	2041	누적	연평균
수도권 밖 본사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폐지(안 제63조의2)	-180	-129	-77	-51	-26	-1,671	-139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세제분석1과	박지원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
박지원	02-6788-4662	jwpark1209@assembly.go.kr